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2008년 8월 22일 서울시 새이름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명칭이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종전 동사무소 명칭인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선발생을 피하고 시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우며 “자치”기능과 “공간” 개념을 반영한 “자치회관”으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 나. 수강료 환급 규정 중 자치회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액 환불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 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운영시 원활한 운영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유치를 위하여 수강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각 조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
- 나. 제12조(주민참여)중 주민이나 단체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 구청장과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신설)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다. 수강료 징수에 대한 일반기준 중 수강료 환급규정에 자치회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액 환불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일할계산후 잔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안 별표 1 제2항)

라. 수강료 징수에 대한 일반기준중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수강료 책정의 현실화를 기함

(안 별표 1의 2항)

마. <별표 2> 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의 감면대상 근거법 중 「모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서울특별시 명칭개정 지침 : 서울시 행정과-16563호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 타**

- (1) 입법예고 : 2008. 10. 30. ~ 2008. 11. 13.(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8.11.18)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제2장의 제목·제4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조제6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자치회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7조제1항에서 제7항·제8조에서 제21조 및 별표 1·별표 2 중 “자치센터”를 각각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자치센터란”을 “자치회관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자치센터와”를 “자치회관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센터는”을 “자치회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로”를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자치센터는”을 “자치회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센터가”를 “자치회관이”로 한다.

제7조제8항 중 “자치센터와”를 “자치회관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

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2의 감면근거법중 「모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한다.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의 수강료 일반기준 중 제2호가목(3)의 환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환급규정

(가)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액 환급

(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개시일 이전 : 전액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 환급

(4) 그 밖에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두는 <u>주민자치센터</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 (생략)</b></p> <p>1. <u>주민자치센터</u>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p> <p>2. (생략)</p> <p><b>제3조(원칙)</b> 제2장에서 정한 <u>주민자치센터</u>와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주민자치센터</b></p> <p><b>제4조(설치 등) ①</b> <u>주민자치센터</u>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을 <u>주민자치센터</u>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② <u>주민자치센터</u>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u>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u>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 ----- ----- ----- ----- <b>자치회관</b>----- ----- -----</p> <p><b>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b></p> <p>1. <u>자치회관이란</u> ----- ----- -----</p> <p>2. (현행과 같음)</p> <p><b>제3조(원칙)</b> ----- <b>자치회관</b> <b>과</b>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자치회관</b></p> <p><b>제4조(설치 등) ①</b> <u>자치회관은</u> ----- ----- ----- ----- ----- -----<b>자치회관</b>-----</p> <p>② <u>자치회관</u>----- ----- <b>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b>으로 -----</p>

현행	개정안
<p>제5조(기능) ① <u>자치센터</u>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 ② ~ ③(생략)</p>	<p>제5조(기능) ① <u>자치회관</u>은 ----- ----- ----- -----.</p> <p>1~6. (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자치센터</u>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생략) ③ <u>자치센터</u>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 <u>자치회관</u>이 ----- ----- ----- -----.</p> <p>② (현행과 같음) ③ <u>자치회관</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운영) ① <u>자치센터</u>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u>자치센터의 운영</u>"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p> <p>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u>자치센터</u>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의</p>	<p>제7조(운영) ① <u>자치회관</u>----- -----(" <u>자치회관</u> " ----- -----) -----.</p> <p>② ----- ----- ----- <u>자치회관</u> ----- -----.</p> <p>③ (현행과 같음) ④ ----- -----</p>

현행	개정안
<p>견을 들어 <b>자치센터</b>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b>자치센터</b>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구청장은 <b>자치센터</b>의 전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및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⑥ 구청장은 <b>자치센터</b>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평가·시상할 수 있으며, <b>주민자치센터</b>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⑦ 구청장은 <b>자치센터</b>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p> <p>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b>자치센터</b>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p>	<p>----- <b>자치회관</b> -----</p> <p>----- <b>자치회관</b> -----</p> <p>⑤ ----- <b>자치회관</b> -----</p> <p>⑥ ----- <b>자치회관</b> -----</p> <p><b>자치회관</b> -----</p> <p>⑦ ----- <b>자치회관</b> -----</p> <p>⑧ ----- <b>자치회관과</b> -----</p>
<p><b>제8조(자원봉사자)</b> ① 구청장과 동장은 <b>자치센터</b>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p> <p>② 자원봉사자는 <b>자치센터</b>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b>제8조(자원봉사자)</b> ① ----- <b>자치회관</b> -----</p> <p>② ----- <b>자치회관</b> -----</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p> <p>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u>자치센터</u>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9조(강사) ① <u>자치회관</u>-----</p> <p>-----</p> <p>-----</p> <p>② -----</p> <p>----- <u>자치회관</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 중 사용료는 <u>자치센터</u>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u>자치센터</u>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제10조(사용료 등) ① <u>자치회관</u>-----</p> <p>-----</p> <p>-----</p> <p>② ----- <u>자치회관</u>-----</p> <p>-----</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p> <p>----- <u>자치회관</u>-----</p> <p>-----</p> <p>-----</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u>자치센터</u>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 <u>자치센터</u>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동장은 <u>자치센터</u>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1조(이용 등) ① ----- <u>자치회관</u>-----</p> <p>-----</p> <p>② <u>자치회관</u>의 -----</p> <p>-----</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자치회관</u>-----</p> <p>-----</p> <p>-----</p>



현행	개정안
<p>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u>자치센터</u>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u>자치센터</u>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12조(주민참여) ① ----- <u>자치회관</u>----- -----,</p> <p>② ----- ----- <u>자치회관</u>----- -----,</p> <p>③ <u>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년도 <u>자치센터</u>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u>자치센터</u>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보고) ① ----- ----- <u>자치회관</u>----- -----,</p> <p>② ----- <u>자치회관</u> ----- ----- -----,</p>
<p>제15조(설치) 동의 <u>자치센터</u>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마포구 000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5조(설치) ----- <u>자치회관</u> ----- ----- -----,</p>
<p>제16조(기능)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자치센터</u>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 4. (생략)</li> <li>5. <u>기타 자치센터</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 ③ (생략)</p>	<p>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자치회관</u>----- -----</li> <li>2. ~ 4. (현행과 같음)</li> <li>5. <u>그 밖에 자치회관</u>----- -----</li> </ol>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17조(구성 등) ① (생략)</b>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b>자치센터</b>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            ③ ~ ⑩ (생략)</p>	<p><b>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b>            ② -----            -----            -----            ----- <b>자치회관</b> -----            -----            -----</p> <p>1. ~ 2.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p>
<p><b>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② (생략)</b>            ③ 고문은 <b>자치센터</b>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p> <p>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b>자치센터</b>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⑤ 위원은 <b>자치센터</b>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b>자치센터</b>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p>	<p><b>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b>            ③ ----- <b>자치회관</b> -----            -----            -----</p> <p>④ ----- <b>자치회관</b> -----            -----            -----</p> <p>⑤ ----- <b>자치회관</b> -----            -----            ----- <b>자치회관</b> -----            -----</p>
<p><b>제20조(해촉) ① (생략)</b>            1. ~ 3. (생략)            4. <b>자치센터</b>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생략)            ② (생략)</p>	<p><b>제20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b>            1. ~ 3. (현행과 같음)            4. <b>자치회관</b>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b>제21조(회의) ① (생략)</b>            ② ~ ④ (생략)            ⑤ 동장은 <b>자치센터</b>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b>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b>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b>자치회관</b> -----            -----</p>

현행	개정안
<p>〈별표 1〉  <u>자치센터</u>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1. 시설 사용료(생략)  2. 수강료  가. 일반기준(생략)  (1) (생략)  (2) (생략)  (3) 환급규정  <u>(가)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u>  - 개시일 이전 : 납부한 수강료 환급 및 동 수강료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 수강료 환급 및 납부한 수강료의 10%배상  <u>(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u>  - 개시일 이전 : 납부한 수강료의 10% 공제후 수수료 잔액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수강료의 10% 공제후 수강료 잔액 환급  (4) 기타,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p> <p>〈별표 2〉  「<u>모자복지법</u>」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p>	<p>〈별표 1〉  <u>자치회관</u>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1. 시설 사용료(현행과 같음)  2. 수강료  가. 일반기준(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환급규정  <u>(가)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액 환급</u>    <u>(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u>  - 개시일 이전 : 전액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후 잔액 환급  (4) 그 밖에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별표 2〉  「<u>한부모가족지원법</u>」-----  -----</p>